

2026년 세종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실태조사 용역 입찰 재공고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에서는 2026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 세종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실태조사」 용역 과제를 다음과 같이 입찰 재공고 합니다.

2026. 9. 2.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I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과 업 명 : 2026년 세종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실태조사
- ☐ 수요기관 :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 ☐ 공고기간 : 2026. 9. 2.(수) ~ 9. 14.(월) 11:00
- ☐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 근거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43조
 - ※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 ☐ 용 역 비 :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3개월
-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 사항, 계약 관련 규정,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입찰참가자격(자격요건 모두 충족)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업종)이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
- ☐ 입찰 참가신청시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참가 불가
- ☐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가(단독 입찰만 가능)

III 입찰 참가 신청

- ☐ 제출마감 : 2026. 9. 14.(월) 11:00까지
-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의 내용 및 서식 참조
-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 ※ 우편, 택배·퀵서비스·이메일 접수 불가
- ☐ 접수처 :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044-251-3263)
 -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으뜸길251, 3층
-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2026. 9. 15.(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대회의실
 - ※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개별 통보
 - ※ 제안서 평가: 기술능력평가(90점)+입찰가격평가(10점)

IV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순서로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결정
-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V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해야 함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이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하여야 함

VI 입찰의 무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20호)에 의함
- ☐ 입찰참가자격신청서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전원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VII 참고사항

- ☐ 본 용역 참가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